

1. 개정이유

초급간부 지원을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 및
현역모집 부사관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

2. 주요내용

가.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(안 제6조)

- 1) 장교후보생 선발시 ‘졸업 후 학사장교’ 및 ‘학군장교’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, 재학 중인 학사장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 시 필기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
- 2) 재학 중인 학사 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포함

나.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단축(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)

- 1)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등병 계급 이상의 사람만 대상으로 규정
- 2) ‘병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’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, 일등병이상 복무 중인 사람은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다음장에 포함

2) 입법예고(2025. 4. 4. ~ 5. 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 중

국방부령 제 호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단서 중 “대학 졸업자”를 “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자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”을 각각 “일등병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) 「군인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	제6조(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필기시험: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<u>대학 졸업자</u> 및 「병역법」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「사법시험법」에 따른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14조(부사관의 임용)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 1. 병장, 상등병 또는 <u>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</u> 복무 중인 사람 2. 3.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,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(兵)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 제7호에 따른다. 1. 병장, 상등병 또는 <u>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</u> 복무 중인 사람 2. ~ 4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제14조(부사관의 임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일등병으로</u>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----- <u>일등병으로</u>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